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32호)

2026.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4.

다. 회 부 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

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
(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공공기관의 안전경영</u> - 공공기관은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안전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신 설>	○ <u>기관장의 직무정지 등</u> -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음 -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시 안전경영 원칙을 명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안전수준 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또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그 직무를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정지시키거나 직무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한국철도공사)나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한국도로공사),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사고(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에 대한 필요성 및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임.

현재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안전등급심사단¹⁾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공공기관 안전

-
- 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심사단 구성) ①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한다.
- ② 심사위원은 법조계·학계·산업계 및 언론계 등 관련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되어 공개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단장은 심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별로 구성하는 분과에 배정할 수 있으며,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검토, 회의 참석, 현장검증 등에 참여한 심사위원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지침들의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안전수준 진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및 해임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에게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⑦ 단장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명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단 기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2. 안전관리지침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의 결정
3. 안전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이의신청 검토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6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 17. (생략) <u><신설></u>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법률 제2106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등</u> 7. ~ 9. (현행과 같음) 10. -----단서,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 ----- ----- 11. ~ 17.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공공기관의 안전경영) ① 공공기관은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안전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현행	개정안
(생략)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⑦ (생략)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 ③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⑥ ----- -----제8항,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 -----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8항,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기관장의 직무정지 등)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현행	개정안
	있다.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의처

02)6788-5151